

‘관세화·관세화 유예’ 따라 쌀 산업 향방 가려져

내년 이후 쌀시장 개방 방식 둘러싸고 수출국과 협상, 2004년 말까지
‘관세화 유예 연장·MMA물량 최소화’ 위한 단판결이 싸움 불가피

지난 1월20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우리나라 쌀 산업의 운명이 걸린 올해 쌀 재협상의 막이 올랐다. 정부의 쌀 재협상 개시의사 통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4.15 총선이 끝난 4월말쯤부터 미국과 중국 등 쌀 수출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쌀 재협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재협상 개시, ‘관세화 유예 연장’ 의미

먼저 쌀 재협상이란 내년 이후 우리 쌀 시장

을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를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은 1995년부터 2004년 말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따라서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내년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가를 협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쌀 재협상이다.

우리 쌀 관세화 유예의 근거인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부속서 5는 2004년 이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쌀 수출국들과 2004년 1년 동안 협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저

관세의무수입량(최소시장접근물량)을 추가로 쌀 수출국에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아무런 협상이 필요 없이 기준 연도 쌀의 국내의 가격차액을 관세로 환산(관세상당치)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만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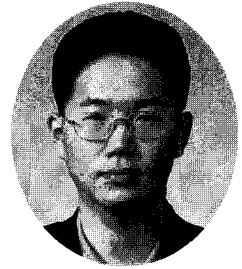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쌀 재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은 쌀의 관세화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며, 그 연장의 대가로 쌀 수출국들에게 일정한 저관세의무수입량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할까.

반드시 협상 통해 결론 도출해야

우리나라가 지난 1월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국과 쌀 협상의사가 있는 나라들을 추려내게 된다. 세계무역기구가 4월 말경 협상의사가 있는 나라 명단을 우리나라에 통보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들은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이 끝나면 그 결과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고, 세계무역기구는 그 내용을 전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켜 검증 받게 된다. 검증이 종료되고 국내 비준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2005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럼 재협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올해 말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

리나라가 쌀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을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관세화 유예 연장을 하지 않고 관세화



한형수
농민신문 농정부 차장

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이후 쌀 수출국들과의 본격협상에서 쌀 수출국들이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저관세의무수입량 증량을 요구하거나,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 관세화 유예 연장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쌀 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협상을 중단하고 농업협정문의 규정에 맞춰 쌀의 관세상당치를 계산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고 관세화하면 된다. 우리 쌀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세상당치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2004년 기준으로 대략 44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정해진 기간인 올해 말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자동관세화 논리이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부속서는 올해 안에 쌀 재협상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협상을 종료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우리 쌀은 자동적으

로 관세화 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쌀의 관세화 유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4조2항의 '예외 없는 포괄적 관세화'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이해당사국간의 특례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례조치는 끝나고 일반규정으로 전환된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우리나라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는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도록 농업협정문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 연장이나, 관세화 전환이나는 어디까지나 협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쌀 수

출국간 협상을 통해 그 결론을 내도록 해야지 정해진 기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된다면 쌀 수출국 입장에서 한국과 힘든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동관세화 논리는 지나친 패배주의적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관세화' 들어올 수 없는 다리 넘는 것

쌀 재협상에서 우리가 취할 최상의 카드는 무엇인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으로 한 협상개시의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했다. 따라서 향후 쌀 재협상은 관세화 유예 연장에 따른 대가인 저관세의무수입물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면서 저관세의무수입물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상의 협상카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쌀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저관세의무수입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그런 만큼 쌀 재협상은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의 대격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에 대한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들의 타협점은 어디일까. 쌀 협상전문가들은 관세화 유예의 대가는 국내 소비량의 8~18%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쌀 수출국에 1988~1990년 3년간 국내소비량의 1%(1995년)~4%(2004년)를 저관세의무수입물량으



로 양허했다. 따라서 올해 쌀 재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 연장 대가는 4%를 기본으로 연장에 따른 추가 의무수입량 해당분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쌀 수출국에 내줘야 하는 저관세의무수입량은 최소 8%가 되고, 수용한계치는 8.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 하면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의 기본적인 저관세물량을 5%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관세화 유예 연장 보상분 3%를 더한 8%가 최소 의무수입물량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과 대만은 관세화 유예 보상으로 3%를 쌀 수출국들에게 추가로 양보한바 있다. 수용한계선 8.2%는 우리나라가 올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2010년도 쌀 예상 수입량이 37만3,300 t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이를 의무수입량으로 환산하면 8.2%가 된다. 이는 만약 쌀 수입국들이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8.2% 이상을 요구할 경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에는 선진국 기본 물량 8%에다 관세화 유예 연장 보상분 3%를 더한 11%가 최소 의무수입량이 되고, 수용상한선은 13.3%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이는 선진국 조건으로 쌀 시장을 관세화했을 경우 2010년 쌀 수입량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13.3%인 60만7,000 t에 이른다는 분석에서다.

우리나라는 올해 쌀 재협상에서 기본 원칙을 관세화 유예 연장으로 정하고 있지만 쌀 수출국들이 유예 연장의 대가로 수용 불가능한 저관세의무수입물량을 요구한다면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협상전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분명한 협상원칙은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는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간 협상에 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관세화로 전환한 상태에서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설정이나 품목별 최소감축률 결정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다. 올해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400% 안팎의 관세상당치를 활용해 관세화로 전환했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서 200% 미만으로 관세상한이 설정되거나 50%에 가까운 품목별 최소감축률이 확정되면 우리 쌀 산업은 그 날짜로 초도화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쌀 협상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관세화는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 연장을 했다가 우리 필요에 의해 전환할 수 있지만 한번 관세화를 하면 다시는 관세화 유예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점도 올해 쌀 재협상에서 반드시 관세화 유예 연장을 관철해야 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농약정보**